

의안번호	2201643
의 퇴 인	황명선 의원
회 답 일	2024. 9. 30.
추 계 번호	24A2042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482.1억원(연평균 93.7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이 중 지방정부(17개 시·도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부담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2.8억원(연평균 2.5억원)
 -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76	—	—	—	—	76	15
추진실적 평가(안 제12조)	79	79	79	79	79	395	79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5조 및 제18조)	275	275	275	275	275	1,375	275
— (중앙)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20	20	20	20	20	100	20
— (지방)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255	255	255	255	255	1,275	255
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안 제23조)	9,238	8,590	8,817	9,051	9,290	44,986	8,997
합계	9,668	8,944	9,171	9,405	9,644	48,207	9,366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함	의무 규정
2	안 제9조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5년 단위의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발전계획 시행을 위해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의무 규정
3	안 제10조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함 ○ 시·도지사는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함	의무 규정
4	안 제12조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함	의무 규정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고,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재량 규정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	
5	안 제13조 (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의 협력 촉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고,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과 지역의 전년도 사회적경제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최 전까지 국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함	의무 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5조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둠	의무 규정
	안 제16조 (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 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및 사무처를 두고, 필요시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음	재량 규정
		○ 정부는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정책국을 두고,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사회적경제과를 둘 수 있음	
7	안 제18조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에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을 둠	의무 규정
		○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을 넘도록 함	
8	안 제21조 (사회적경제 통계조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사회 관련 통계 작성시 사회적경제분야를 국민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하여야 함	의무 규정
9	안 제22조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 사회적경제조직은 관련 연대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	재량 규정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연대조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10	안 제23조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을 받아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함	의무 규정
11	안 제24조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등)	○ 중앙정부는 시·도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재량 규정
		○ 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또는 특화 중간지원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12	안 제25조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 시·도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도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재량 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6조 (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함	의무 규정
	안 제28조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 조성함 － (재원) 정부·지자체 출연금,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정 책기금 및 금융,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지역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음	재량 규정
	안 제29조(기금의 용도)	○ 기금은 다음 용도에 사용함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에 대한 투·융자 등 금융지원사업, 관련 연구개발, 사 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사회 금융기관 역량강화사 업,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등 민간 사회적 금융 조성 및 투자,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투자 기준에 관한 사항,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정한 사업 등	의무 규정
14	안 제3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 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장 포함 위원의 1/2 이상을 민간위원 및 민간전 문가로 위촉하여야 함	의무 규정
	안 제27조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과육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 제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등 민간 사회적금융기 관을 지정·육성하여야 함	의무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 정하여 개인·법인·단체 등이 출자·투융자·기부 등을 통해 사회투자민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 편의 및 세제상 혜택을 제 공할 수 있음	재량 규정
15	안 제32조(민간기금의 조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투자기금 출연·기부하는 기업·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편의와 세 제상 감면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 규정
16	안 제34조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실천 및 기 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 해야 함	의무 규정
		○ 정부는 사회적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 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등에 보 급할 수 있음	재량 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35조(시설비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저렴하게 임대·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여할 수 있음	재량 규정
18	안 제36조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일반기업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제상 감액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음	재량 규정
19	안 제37조 (교육·훈련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 규정
20	안 제39조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자발적인 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상·행정상·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재량 규정
21	안 제40조(국제협력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음	재량 규정
22	안 제41조 (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과 참여 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컨설팅·공간 및 시설지원·활동비 보조 및 기금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 규정
23	안 제46조(벌칙)	○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의무 규정
24	안 제47조(과태료)	○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재정수반요인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	-
2	안 제9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 수립)	×	· 기존 조직과 예산 활용
3	안 제10조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 기존 조직과 예산 활용
4	안 제12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	-
5	안 제13조(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6	안 제15조(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안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	-
7	안 제18조(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	-
8	안 제21조(사회적경제 통계조사)	×	· 기존 조직과 예산 활용
9	안 제22조(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	· 기존 조직과 예산 활용
10	안 제23조(한국사회적경제위원의 설립 등)	○	-
11	안 제24조(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등)	×	· 기존 조직과 예산 활용
12	안 제25조(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	· 기존 조직과 예산 활용
13	안 제26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안 제28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안 제29조(기금의 용도)		
	안 제3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14	안 제27조(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	· 기존 조직과 예산 활용
15	제32조(민간기금의 조성)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16	제34조(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	· 기존 조직과 예산 활용
17	제35조(시설비등의 지원)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18	제36조(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19	제37조(교육·훈련등의 지원)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20	제39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	· 기존 조직과 예산 활용
21	제40조(국제협력 등)	×	· 기존 조직과 예산 활용
22	제41조(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과 참여 증진)	×	· 기존 조직과 예산 활용
23	제46조(별칙)	×	· 재정수입의 증가(미대상)
24	제47조(과태료)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중 신설에 해당하는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함에 따라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제정안 중 현재 시행 중인 사업과 유사한 경우 기존 사업수행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하고, 그 외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된 재량사업의 경우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범위·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는 관계로 본 추계에서 제외
 - (기존 사업수행 내에서 수행 가능) 안 제9조~제10조, 안 제21조~제22조, 안 제24조~제25조, 안 제27조, 안 제34조, 안 제39조~안 제41조의 경우 기존 사업수행 조직과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추계에서 제외
 - (선언적·권고적 규정/구체적 사업 규모 추정 곤란) 안 제13조, 안 제26조·제28조·제29조·제31조 및 제32조, 안 제35조~제37조는 선언적·권고적 규정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업규모 등의 추정이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사유에 해당
- 제정안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NABO 경제전망(2024.3.)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함

[표 2] 비용추계에 사용된 NABO 경제전망(2024.3.기준)

(단위: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 물가상승률	2.2	2.2	2.1	2.1	2.1
명목 임금상승률	3.4	3.2	3.2	3.2	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2024.3.)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5년 단위의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7,600만원(연평균 1,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 제정안과 유사한 사회적경제 관련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된 연구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3] 제정안과 유사한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연구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기관	수행시기	금액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고용노동부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47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2020	117
전북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	2019	88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고용노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50
평균				76

자료: 온-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4]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비용: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비용	76	-	-	-	-	76	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경우 현재 3~5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수행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

[표 5] 최근 수립된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사례 예시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시기	금액
사회적경제 2차 기본계획 수립(2021~202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0	45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서대문구	2021	49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2024~2028)	전라남도	2023	36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5개년 계획 수립	경기도 안양시	2023	20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2024~2028)	서울시 은평구	2023	22

자료: 온-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안 제12조)

□ 제정안에 따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4억원(연평균 7,900만원) 이상으로 추계

- 제정안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는 연구용역 방식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제하고, 제정안과 유사한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연구용역비 평균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6] 제정안과 유사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관련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기관	수행시기	금액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60
2021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4개권역) 추진실적 평가 연구	환경부	한국대기환경학회	2022	14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건복지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55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및 201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건복지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53
평균				79

자료: 온-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7] 제정안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의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추진실적 평가 비용	79	79	79	79	79	395	79

자료: 온-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다.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구성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 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원(연평균 2,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구성) 제정안은 위원장 2명을 포함 4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1/2 이상이 되도록 규정. 따라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 20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가정
 - (횟수) 제정안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연간 분기별 1회씩 총 4회 개최될 것으로 가정
 - (단가)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회당 25만원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연간 추가재정소요) 민간위원 20인 × 25만원 × 연 4회 = 2,000만원

[표 8] 제정안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안 제15조)	20	20	20	20	20	10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안 제18조)

- 제정안에 따라 시·도별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지방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3억원(연평균 2.6억원) 이상으로 추계
 - (구성) 제정안은 위원장 2명을 포함 3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1/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민간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가정
 - (횟수 및 단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동일하게 민간위원 수당은 회당 25만원(추계기간 동안 고정될 것으로 가정), 회의 횟수는 연 4회

- (연간 추가재정소요) 15인 × 25만원 × 연 4회 × 17개(시·도) = 25,500만원

[표 9] 제정안의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안 제18조)	255	255	255	255	255	1,275	2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안 제23조)

- 제정안에 따라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운영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450억원(연평균 90억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 제정안은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성격을 사회경제 관련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규정할 뿐 그 외 조직규모 특징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정하지 않음
- 본 추계는 정책개발 공공기관 중 제정안과 유사한 조직에 해당하는 육아정책연구소¹⁾ 운영비용을 참고함
 -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운영비는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임차료 및 자산취득비로 구성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동 경비는 전액 정부 출연금으로 조달될 것으로 가정
 - 한국사회적경제원 정부 출연금을 추계함에 있어 인건비는 NABO 명목 임금상승률, 그 외 기관 고유사업비·일반 사업비·임차료는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단,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첫해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1)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에 보다 가까워 보이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으나, 동 기관은 제정안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과 비교할 때 출연사업 등을 다수 진행하여 기관의 규모가 큼(2024년 예산 기준 정부출연금(억원): 한국사회적경제원 338 VS 육아정책연구소 81). 비용추계면에서는 제정안의 조직 기능과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육아정책연구소를 유사조직으로 전제함

[표 10] 육아정책연구소 2024년 운영예산 중 정부출연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정부출연금 편성 내역	2024년 예산
정부출연금 합계	8,135
가. 인건비(정규/무기계약직 인력)	3,650
나. 기관 고유사업비(기관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사업)	924
다. 일반 사업비(기본사업외 단·중기 사업)	2,105
라. 임차료(사무실 임차보증금, 임차료 등)	1,465
	870 ¹⁾

주 1) 육아정책연구소 설립연도(2019년) 임차보증금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경영공시(2024 사업계획, 2019년 재무제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11] 제정안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및 운영 비용: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인건비	3,775	3,896	4,021	4,151	4,284	20,128	4,026
기본경비	944	965	986	1,008	1,030	4,934	987
사업비	2,151	2,199	2,247	2,296	2,347	11,240	2,248
임차료	1,497	1,530	1,562	1,595	1,629	7,813	1,563
	870	—	—	—	—	870	174
합계	9,238	8,590	8,817	9,051	9,290	44,986	8,997

주: 1. 인건비는 정부 출연 인건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인력분)에 NABO 명목 임금상승률을, 그 외 기본경비·사업비·임차료는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2. 임차료는 2025년은 임차보증금과 지급임차료를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지급임차료만 반영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해당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태정림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태정림	02-6788-4652	jitae@assembly.go.kr